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92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김기현 · 김미애 · 김정재
박성민 · 조지연 · 서지영
김선교 · 추경호 · 성일종
한지아 · 김대식 · 조정훈
박성훈 · 서일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략)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u>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u><신 설></u>	1. <u>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u>해당하는 자</u>
<u><신 설></u>	2. <u>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